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2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되어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규격 등 필요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제 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장비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신설 2021. 10. 14.>

산불진화장비의 종류(제34조의2 제1항 관련)

분류	내용
1. 예방장비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디지털단말기, 산불소화시설, 파쇄기 등
2. 진화장비	항공진화장비 :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 고정익 항공기, 진화드론, 밤비바켓, 스노클펌프 등 동력진화장비 :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동력펌프 등 개인진화장비 : 등짐펌프, 진화총, 에어진화기, 개인 진화장비세트(진화갈퀴, 낫, 톱) 등 기타장비 : 진화탄, 진화약제, 저수조, 호스릴, 간이 기상관측기 등
3. 안전장비	안전모, 안전화, 방염텐트, 진화복, 방연마스크, 장갑, 전 등 등
4. 조사·감식장비	조사장비 : 드론, 거리측정기, 카메라, 풍속계, GPS, 등 감식장비 : 감식세트(증거물번호판, 방향지표카드, 깃발, 나침반, 핀셋, 자석봉, 줄자, 돋보기, 격자세트, 출입금지선 등)
5. 산불전용통신장비	무선중계기 통신기 : 고정국, 육상국, 이동국(차량용, 휴대용) 등
6. 기타장비	장비·인력 운반차량, 영상모니터, 영상전송장치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4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장비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